

2024. 4. 24.(수)

## 브리핑

2024년 4월 24일(수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의결 안건]

가. 지상파방송정책과	김성환 과장(2110-1410)
나. 지상파방송정책과	김성환 과장(2110-1410)
다. 지역미디어정책과	김성욱 과장(2110-1450)
[보고 안건]	
가.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	김우석 과장(2110-1560)

## 2024년 제21차 위원회 결과

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,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

### [의결 안건]

#### 가. (주)마금의 대구문화방송(주) 주식 처분 등 행정처분에 관한 건

- 방송법 제15조의2 제1항을 위반한 (주)마금(대구문화방송(주) 주주)에 대해 방송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함

#### <방송법 위반사항>

구분	주요내용
위반사항	(주)마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대구문화방송(주)의 지분을 32.5% 소유
관련규정	방송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30% 이상 취득하는 경우,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

#### 나. (주)삼라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

- 방송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(주)삼라((주)울산방송 최다액출자자)에 대해 방송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함

#### <방송법 위반사항>

구분	주요내용
위반사항	(주)삼라는 지상파방송사업자 (주)울산방송의 주식을 30% 소유
관련규정	방송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대기업(계열사 합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)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%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

#### 다. 경남기업(주)의 지상파방송사업자(DMB)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

- 방송법 제8조 제3항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남기업(주)((주)와이티엔디엠비 출자자)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제한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함
  -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10%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나 대기업인 SM기업집단 소속인 경남기업(주)은 (주)와이티엔디엠비의 주식 17.26%를 소유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하지 못함
  - ※ 2차 시정명령('23.8월)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태가 지속되어 3차 시정명령 의결

### [보고 안건]

#### 가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에 관한 사항

-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'24. 1. 23. 공포)됨에 따라 '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·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'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을 보고함